

『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대관 시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, ‘관람료’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문화예술회관 ‘정의’ 추가 신설(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)
 - ‘사용자’ (제4호) 및 ‘이용자’ (제5호)에 대한 정의 신설
- 문화예술회관 ‘사용허가의 제한’ 규정 추가 신설(안 제4조)
 - 정치, 종교적 성격의 공연, 전시 및 행사
- 문화예술회관 ‘관람료’ 및 ‘손해배상’ 조례 개정
(안 제11조제3항 및 제7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회관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람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를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,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의 선교·포교 및 집회 목적의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이므로 대관 제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안 제4조의 ‘정치, 종교적 성격의 공연, 전시 및 행사’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사용허가 제한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,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 적용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의도를 명확히 하여 조문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음.